

「평창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17년 2월 20일 장문혁의원외 5인이 발의하여 2017년 3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1. 제안이유

-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 관련 법령이 제·개정 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준수 및 조례 입법의 원칙에 맞게 조문과 형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결산검사 위원회 정수를 5명으로 규정(안 제2조)
- 위원회 선임은 의회위원장의 추천으로 의회본회의에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회 명단을 군수에게 알리고, 군수는 위원회에 대하여 위촉장 수여(안 제3조)
- 의회위원장의 위원추천은 의회위원 1명과 적격자 2명,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 위원회는 비상근으로 하고, 위원회 결산검사 기간은 20일이내로 규정(제5조)
- 대표위원회는 위원으로 선임하는 의원이 되며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 총괄 등 역할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1조 전단에 따른 결산검사위원회에 대한 설명·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 결산검사 일정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
- 결산검사 감사의견서에 관하여 규정(안 제9조)
- 검사업무 보조 및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규정(안 제10조, 제11조)
 - 수당 인상 : 70,000원/일 ⇒ 100,000원/일
- 기밀엄수 등을 규정(안 제12조)

3. 관련법령(또는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관련 법령이 제·개정 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준수 및 조례 입법의 원칙에 맞게 조문과 형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은 의회의장이 선임하여 위원의 명단을 군수에게 알리고, 위원에 대하여 군수가 위촉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지방회계법 제정·시행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설명·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결산검사에 따른 위원수당을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 인상 하였음.
- 본 조례안은 조문 및 형식은 적절하게 작성되었으며,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

□ 시군별 결산검사위원 수당지급 기준

시군별	지급기준	소관부서	비 고
춘천시	100,000원 / 1일	회계과	
원주시	150,000원 / 1일	회계과	
강릉시	100,000원 / 1일	회계과	
동해시	100,000원 / 1일	회계과	
태백시	100,000원 / 1일	회계과	
속초시	기본 70,000원 / 초과 30,000원	회계과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함
삼척시	100,000원 / 1일	회계과	
홍천군	70,000원 / 1일	재무과	
횡성군	70,000원 / 1일	세무회계과	
영월군	70,000원 / 1일	재무과	
정선군	100,000원 / 1일	세무회계과	
철원군	100,000원 / 1일	재무과	
화천군	100,000원 / 1일	재무과	
양구군	70,000원 / 1일	재정운영과	
인제군	기본 70,000원 / 초근 30,000원	세무회계과	
고성군	70,000원 / 1일	재무과	
양양군	70,000원 / 1일	세무회계과	

※ 작성기준 : 2017년 3월 현재 관련 조례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감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감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 ②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감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회계법

-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회에게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11조(결산감사위원회에 대한 설명·교육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위원이 결산서의 검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업무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교육하고, 그 밖에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